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22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6.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 3. 15. 접수 제22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받은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55045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206,965	2006-05-11 ~ 2006-10-31	173	24.0%	251,050	18,020,411
2006-11-01 ~ 2021-07-01	5,356	21.0%	6,800,838		
1,041,538	2006-05-11 ~ 2006-10-31	173	24.0%	118,479	
2006-11-01 ~ 2021-07-01	5,356	21.0%	3,209,535		
3,248,503	합계	14,771,908			

다. C의 부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6.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C와 피고가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6. 29.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 3. 15. 접수 제22090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7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계속 중 C가 인천지방법원 2021개회102533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21. 8.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권

별지